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포함 〉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13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포함(제23조제3항 신설)	3
2. 개정안 부칙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병덕 의원 등 15인

2. 발 의 일 : 2025. 11. 24.

3. 회 부 일 : 2025.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범위에
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학교는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 및 혐오·증오·차별 등을 조장하고 확산하
는 유해한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미
디어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미디어의 영향과 올바
른 분석과 이해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
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포함(제23조제3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이하 “미디어 리터러시¹⁾”라고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23조(교육과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
<u>③·④</u> (생략)	<u>④·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1)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는 미디어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을 뜻하나, 오늘날의 의미는 기능적 의미와 비판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능적 리터러시**는 텍스트에 표현된 문자, 그림 등을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비판적 리터러시**는 텍스트에 표현된 사회문화적 상황과 맥락까지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함 (김형선, 초등 도덕과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적용 방안, 2024.2,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p33).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과 같음)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 ----- ----- ----- ----- ----- ----- ----- ----- -----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②·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약 8시간(479.6분)으로, 대부분의 청소년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97.4%), 인터넷 포털(97.3%), 메신저 서비스(95.8%)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브(97.3%) 다음으로 유튜브 쇼츠(68.9%)와 인스타그램 릴스(47.6%), 틱톡(39.6%)으로, 이용률 2~4위가

모두 숏폼 콘텐츠 플랫폼이었음.²⁾

□ 청소년들은 뉴스를 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더 짧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이용한다는 비율은 77.9%, 텔레비전을 통해 뉴스를 시청한다는 비율은 69.1%, PC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49.7%로 나타났고, 인터넷을 통한 뉴스는 인터넷 포털(63.7%),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63.3%), SNS(49.3%), 메신저 서비스(46.9%), 인터넷 뉴스 사이트(17.1%), 언론사 홈페이지(15.3%), 온라인 커뮤니티(7.0%)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³⁾

□ 한편, 가짜뉴스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특정 개인이나 정파를 겨냥해 비난하거나 상호 공방전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거나 특정 국가의 운명을 바꿔 놓기도 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임.⁴⁾

□ 또한, 소셜미디어에 가장 친숙한 10대들의 경우 가짜뉴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⁵⁾⁶⁾, 청소년들이 최근들어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숏폼 형태의 콘텐츠 플랫폼의 경우 부적절한 정보나 선정적·폭력적 콘텐츠

2) 한국언론진흥재단, [보도자료]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주요 결과 발표, 2022.12.01.

3) 한국언론진흥재단, [보도자료]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주요 결과 발표, 2022.12.01.

4) 정학구, 탈진실시대의 가짜뉴스 확산과 언론 신뢰도의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2019.12, p21

5) "10대 청소년 소셜미디어 가짜 뉴스에 가장 취약", SBSNEWS, 2016.11.2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02275)

6) 5·18기념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서던포스트에 의뢰해 ‘2021년 청소년 5·18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10.9%의 청소년만이 5·18 가짜뉴스를 인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청소년 10명 중 9명 5.18 가짜뉴스 구분 못해...5·18 기념재단, 국민일보, 2021.10.26.,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00658>).

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과 세계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부정적 정보의 노출은 청소년들이 왜곡된 사회적 기준을 형성하거나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⁷⁾

□ 따라서, 가짜뉴스 및 유해한 콘텐츠 등 학생들을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콘텐츠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 「교육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는 학교의 장에게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등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⁹⁾¹⁰⁾

7) 신영환, 최혜선, “숏폼 콘텐츠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연구”, 홀리스틱 융합교육연구 제29권 제1호, p84

8)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국어, 사회, 과학, 공통국어 등 교과(목)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교육하는 범교과 학습과 연계하여도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 언어 소양(언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다양한 텍스트를 목적,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생산·공유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여러 교과(목)¹¹⁾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아래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교과(목)의 과목별 성취기준임.

[과목별 성취 기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사08-03] 민주주의에서 <u>미디어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미디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올바르게 이용하는 태도를 기른다.</u> • [9사(일사)02-02] 우리 주변에서 활용되는 미디어들을 탐색하고, <u>미디어를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와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u> • [9사(지리)03-01] 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를 활용하여 유럽의 국가와 주요 |
|--|

9)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10) 2026년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0862호)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11) 사회, 일반사회, 사회문화, 정치, 사회문제 탐구, 매체와 의사소통(2022 개정 교육과정 신설, 단계별 적용 중, 고등학교 선택교과), 현대사회 윤리

도시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연환경의 특성을 지도로 표현한다.

- [12사문03-02] 미디어의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가 생산하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적 메시지 생산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12정치02-04] 미디어를 통한 정치 참여 방법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권자이자 피선거권자로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 [12여지04-01] 미디어와 여행의 상호관계를 통해 여행의 변화양상을 조사하고 미래 사회의 여행자와 여행의 모습을 예측한다.
- [12사탐02-02]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하고,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12현윤03-02] 정보통신 기술과 뉴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윤리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미디어 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 [12매의01-02]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의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청소년 문화가 지닌 문제와 가능성을 탐구한다.
- [12매의01-03] 영화, 게임, 웹툰 등의 매체 자료가 현실을 재현하는 방식을 분석하며 생산자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한다.
- [12매의01-04]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매체 생산자의 관점을 파악하고 매체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한다.
- [12현윤03-02] 정보통신 기술과 뉴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윤리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미디어 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제공 : 국가교육위원회

□ 이와 같이, 현행법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 교육과정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개정안 심사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¹²⁾에 관련 내용을 이미 반영하였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교육

하는 범교과 학습과 연계하여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법령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¹³⁾,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¹⁴⁾, 개정안과 같이 특정 교육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경우 기존 법률과 관계 및 법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검토 의견임.

12)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 사회, 공통국어 등

13)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스마트 기기 사용 교육),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 등(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등)

14)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새로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시·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0만명 이상인 경우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안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